

의안번호	제 2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수면 연구소 시험 수수료 불반환 조항 개정 및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내수면연구소 시험수수료 불반환 조항 개정(안 제4조 제6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·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고,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<u>제7조제1항에 의한 시험 등의 거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고,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규제 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
제4조(수수료의 반환)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